

漁港消息

발행경 孫井植
편집인 金在克
인쇄인 金在克

社團 韓國漁港協會
法人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05-9

TEL 568-6651~3
FAX 568-6653

月刊: 비매물

등록번호: 라3459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會訓
● 誠 實
● 奉 仕
● 創 意

漁港은
우리 漁民의
永遠한
어머니 품

漁港法改正案 국회通過 開發촉진 管理機能강화

24年만에 補完 漁港界 크게 반겨

漁港協會 特殊法人化

漁港技術 조사 研究 등 活性化 기대

○ 18일 제191회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18일 제191회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18일 제191회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 18일 제191회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18일 제191회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18일 제191회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6년만에 이론快擧

○ 6년만에 이론快擧 6년만에 이론快擧 6년만에 이론快擧

業界·관계기관 함께 거둔 값진 結果

초점

業務能率化 위해 정부果敢히 移讓

○ 「漁港協」莫重한 責任·使命 絶감 業務能率化 위해 정부果敢히 移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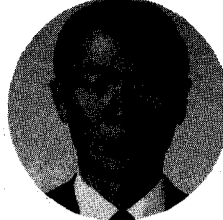
工事감리 一元化 明年

○ 工事감리 一元化 明年 工事감리 一元化 明年

濠洲등 새 곳살펴

○ 濠洲등 새 곳살펴 濠洲등 새 곳살펴 濠洲등 새 곳살펴

○ 5次海外先進어항視察 5次海外先進어항視察 5次海外先進어항視察



朴光勳 次長
金鍾哲·徐承旭 局長도

朴光勳 次長승진

金鍾哲·徐承旭 局長도

○ 朴光勳 次長승진 朴光勳 次長승진 朴光勳 次長승진

業界·관계기관 함께 거둔 값진 結果

초점

業務能率化 위해 정부果敢히 移讓

工事감리 一元化 明年

○ 5次海外先進어항視察 5次海外先進어항視察 5次海外先進어항視察

漁港法改正

現 行	改 正
<p>第19條(財産の登記) ①水産局長 또는 道知事は 施設計劃에 따라 漁港修築事業에서 생긴 土地 또는 工作物을 最終竣工日로부터 1年內에 登記하여야 한다.</p>	<p>장한다. 第26條(財産의 登記) 管理廳은 漁港施設事業으로 造成 또는 設置된 土地 또는 施設에 對하여 竣工日로부터 2年內에 登記하여야 한다.</p>
<p>第22條(漁港臺帳) 水産局長 또는 道知事は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漁港臺帳을 備置하여야 한다.</p>	<p>第4章 漁港의 관리 및 사용 (削 除)</p>
<p>第23條(漁港施設의 位置變更) 道知事は 漁港施設의 位置를 變更하거나 賃貸하거나 또는 撤去하고자 하는 때에는 水産局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新 設)</p>	<p>(削 除)</p>
<p>(新 設)</p>	<p>第27條(漁港施設 管理規程) 管理廳은 漁港施設의 효율적인 管理를 위하여 農林水産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漁港施設管理規程을 制定하여 한다.</p>
<p>(新 設)</p>	<p>第28條(漁港施設의 使用許可등) ①漁港施設을 사용 또는 占有하고자 하는 者는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但한, 農林水産部令 또는 直轄市·道의 條例(第2種 漁港에 關한다. 이하같다)로 定하는 期間과 範圍內에서 漁港施設을 使用 또는 占有하고자 하는 者는 管理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②管理廳이 基本施設區域과 機能施設區域의 漁港施設을 使用 또는 占有의 許可를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公廳目的에 關하여 許可하여야 한다. ③第1項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漁港施設을 使用 또는 占有하고자 하는 때에는 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④管理廳은 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漁港機能 保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漁港施設의 使用 및 占有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 는 農林水産部令 또는 當해 直轄市·道의 條例로 定한다.</p>
<p>(新 設)</p>	<p>第29條(使用許可등의 取消) ①管理廳은 第28條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定하여 使用 또는 占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但한,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偽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때 2. 第19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第18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이를 準用한다.</p>
<p>第20條(使用料의 徵收) ①水産局長은 大統領令으로, 道知事は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는 바에 依하여 漁港의 利用者로부터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者에 對하여 는 國稅徵納處分 또는 地方稅徵納處分の 例에 依하여 徵收할 수 있다. (新 設)</p>	<p>第30條(使用料등의 徵收) ①水産局長은 農林水産部令이, 市·道知事は 當해 直轄市·道의 條例가 定하는 바에 따라 第28條의 規定에 依하여 漁港施設을 使用 또는 占有하는 者로부터 使用料 또는 占有料를 徵收할 수 있다. 但한,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에 對하여 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使用料 또는 占有料를 減免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料 또는 占有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者에 對하여 는 國稅 또는 地方稅 徵納處分の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p>
<p>第12條(費用分擔) 漁港施設을 다른 用途에 利用하는 때에는 그 漁港施設의 管理에 所要되는 費用은 管理機關과 利用者가 協議하여 分擔하게 할 수 있다. (新 設)</p>	<p>第31條(使用料등의 귀속) 第1種 漁港 및 第3種 漁港에 對한 使用料 및 占有料는 國家의 收入으로, 第2種 漁港에 對한 使用料 및 占有料는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한다. (削 除)</p>
<p>(新 設)</p>	<p>第32條(금지행위) 누구든지 定당한 사유없이 漁港區域內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1. 漁港施設을 損壞하여 漁港의 機能을 해하는 행위 2. 漁港施設의 構造를 改造하거나 位置를 변경하는 행위 3. 廢船을 放置하는 행위 4. 漁港區域을 埋立하거나 掘穿하는 행위 5. 漁港區域內에 障礙物을 放置하는 행위 6. 廢棄物을 指定場所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p>
<p>(新 設)</p>	<p>第33條(原狀回復등) ① 管理廳은 漁港機能의 保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第32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에 對하여 일정한 기간을 定하여 原狀回復 또는 제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의 規定에 따라 原狀回復 또는 제거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②管理廳은 第32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를 住所不明등의 사유로 알 수 없거나 漁港의 機能保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第1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廢船·障礙物·廢棄物의 제거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p>
<p>(新 設)</p>	<p>第5章 補 則</p>
<p>第26條(權限의 委任) 水産局長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그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道知事에게, 道知事は 市長 또는 郡守에게 委任할 수 있다.</p>	<p>第34條(權利·義務의 移轉)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權利 또는 義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 를 移轉할 수 있다.</p>
<p>第24條(協議 등)</p>	<p>第35條(權限의 위임) ①水産局長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所屬機關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權限을 위임받은 市·道知事は 該 權限의 一部를 水産局長의 승인을 얻어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再委任할 수 있다.</p>
<p>漁港區域內에서 이 法에 規定한 以外の 事業을 하는 때에는 그 事業을 管掌하는 主務官廳은 미리 水産局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新 設)</p>	<p>第36條(協議)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漁港區域內에서 公有水面埋立法에 의한 埋立基本計劃을 수립하거나 産業立地開發에 關한 法律에 依하여 工業團地를 指定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漁港區域內에서 鑛業法·水産業法·公有水面管理法 기타의 法에 依하여 鑛業權등의 權利를 設定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한다.</p>
<p>(新 設)</p>	<p>第37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第11條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施設計劃의 수립 및 변경에 關한 사항을 告示한 경우 그 내용에 關하여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거친 사항에 對하여는 다음의 許可·認可·免許·승인·同意 및 協議등(이하 "許可·認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의 關係法律에 의한 許可·認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都市計画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事業 實施計劃의 認可 2. 公有水面管理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占有 및 使用의 許可 3. 公有水面埋立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免許 및 同法 第2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部長有과의 協議 또는 승인 4. 水道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의 敷設認可 5. 下水道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工事의 許可 6. 河川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許可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 占有許可 7. 水産業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工事施行 승인</p>

現 行	改 正
<p>(新 設)</p>	<p>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但한, 當해 처분의 相手方 또는 該 代理人이 定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등으로 意見陳述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p>
<p>(新 設)</p>	<p>第19條(公廳을 위한 처분) ①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12條第2項前段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第15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取消하거나 사업의 중지 또는 施設物의 改築을 명할 수 있다. 1. 漁港의 興件이 변하거나 漁港의 효율적 管理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公共의 危害를 輕減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3. 公共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②第18條第3項 및 第22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이를 準用한다.</p>
<p>第17條(監督·報告) ①水産局長은 監督에 必要한 때에는 事業者에게 該 事業의 施行에 關한 事項 또는 報告를 命하거나 資料를 提出하게 할 수 있다. ②水産局長은 必要한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場, 事業所 등에서 實問하거나, 書類, 簿冊 또는 工事內容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③前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은 該 身分을 表示하는 證票을 携帯하고 이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p>	<p>第20條(보고·監督) ①管理廳은 非管理廳 또는 第15條第1項後段의 規定에 依하여 승인을 얻어 事業을 施行하는 者에 對하여 當해 事業의 施行에 關한 보고를 명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管理廳은 필요한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場 등에서 關係文書 또는 工事內容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③前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은 該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前項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水産部令으로 定한다.</p>
<p>第16條(土地·水面등의 使用) ①國家 또는 事業者가 漁港의 修築事業의 施行 또는 維持管理를 위하여 他人이 所有 또는 管理하는 土地나 水面에 出入하거나 材料의 搬載場으로서 一時 使用하고자 할 때에는 10日前에 該 所有者 또는 管理者에게 該 뜻을 通知하고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正當한 使用料를 支給한다. (新 設)</p>	<p>第21條(土地·水面에 出入과 사용등) ①管理廳 또는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漁港施設事業을 施行하는 者는 漁港施設事業의 施行 또는 漁港의 管理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他人이 所有 또는 占有하는 土地나 水面에 出入하거나 他人이 所有 또는 占有하는 土地나 水面을 材料의 搬載場, 通路 또는 臨時道路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竹木 기타 障礙物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을 하고자 하는 者는 該 日時의 場所를 미리 該 土地나 水面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通知하여야 하며, 他人의 土地나 水面을 일시 사용하거나 竹木 기타 障礙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該 所有者 및 占有者에게 通知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但한, 該 所有者 또는 占有者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③해뜨기전과 해진후에는 當해 土地의 占有者의 승낙없이 宅地 또는 답으로 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없다. ④제1項의 規定에 依하여 他人의 土地나 水面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該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第20條第4項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p>
<p>第18條(竣工檢査) 事業者가 漁港修築事業을 竣工한 때에는 遲滯없이 水産局長의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新 設)</p>	<p>第22條(非常災害時의 土地등의 使用) 管理廳 또는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漁港施設事業을 施行하는 者는 第2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天災·地震 기타 非常災害로 인하여 漁港施設事業의 施行 또는 漁港의 管理에 필요한 때에는 他人의 土地·家屋·船舶 기타 物件을 變更改 또는 除去하거나 土石, 竹木, 運搬具 其他 物件을 一時 使用 또는 收用할 수 있다. 이 경우 損失이 생긴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正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新 設)</p>
<p>(新 設)</p>	<p>第23條(損失補償등) ①管理廳 또는 이 法에 依하여 漁港施設事業을 施行하는 者는 第21條第1項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者가 있는 경우에는 該 損失을 입은 者와 協議하여 當해 損失에 對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管理廳이 決定한 금액을 損失을 입은 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但한, 損失을 입은 者가 受領을 거부하는 등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法院에 提訴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에 關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補償金의 지급 또는 提訴通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관할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p>
<p>(新 設)</p>	<p>第24條(竣工檢査) ①非管理廳이 漁港施設事業을 완료한 때에는 農林水産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管理廳에 竣工報告書를 제출하여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의 申請을 받은 管理廳은 檢査결과 당해 사업이 許可한 내용대로 施行되었는지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竣工檢査報告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報告를 교부받기 전에는 當해 事業으로 造成 또는 設置된 土地나 施設을 使用할 수 없다. 但한, 管理廳으로부터 竣工前 使用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竣工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公有水面埋立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 2. 河川法 第20條의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p>
<p>(新 設)</p>	<p>第25條(漁港施設의 귀속등) ①非管理廳이 施行한 漁港施設事業으로 인하여 造成 또는 設置된 土地 및 施設은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條件에 따라 竣工과 동시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다. 但한, 第12條第3項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漁港施設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②非管理廳은 第1項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漁港施設事業으로 造成된 土地중 漁港施設을 敷地를 제외한 殘餘土地에 對하여 該 投資한 總事業費의 범위內에서 所有權을 취득할 수 있다. ③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 土地 및 施設에 對하여는 總事業費중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非管理廳이 취득하는 殘餘土地의 價額을 該 금액의 범위內에서 當해 非管理廳에 無償으로 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但한,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를 포함한다) 및 漁村契가 아닌 者에게는 基本施設區域과 機能施設區域을 使用·收益하게 할 수 없다. ④非管理廳에 無償으로 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는 期間은 20年을 超過할 수 없다.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한 總事業費 및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非管理廳이 취득하는 殘餘土地 價額의 算定方法은 大統領令으로</p>

Table with 2 columns: 現行 (Current), 改正 (Revised). It lists various articles (e.g., 第28條, 第25條, 第23條) and their amendments regarding harbor management, permits, and associations.

Table with 2 columns: 現行 (Current), 改正 (Revised). It lists various articles (e.g., 8, 9, 10, 11, 12, 13, 38, 39, 40, 41) and their amendments regarding harbor development, associations, and penalties.

Advertisement for '제6회 漁港寫眞公募' (6th Fishing Port Photo Contest). Includes the slogan '많은 응募바랍니다' (We hope for many submissions) and lists details for submission, prizes, and winners.

Advertisement for '수산물협회의회를 주재' (Coastal Products Association Meeting). Features portraits of two members, 李義秀 and 李方鎬, and a list of attende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